

선금 지급에 대한 검토내역서

- 건 명: 용답동 상가시장 일대 하수관거 경사조정 공사(1차)
- 계약상대자: 주식회사 크로스텍엔지니어링 대표 조광치
- 계약 금액:
 - 총차계약금액: 금1,280,197,000원(금십이억팔천일십구만칠천원)
 - 1차 계약금액: 금665,228,000원(육억육천오백이십이만팔천원)
- 계약 일: 2015. 6. 11.
- 준공 기한:
 - 총 준공기한: 2016. 6. 13.
 - 1차 준공기한: 2015.12. 31.
- 선금신청액: 금88,339,860원(금팔천팔백삼십삼만구천팔백육십원)
 선금비율: 내역서상 재료비 + 경비의 약 30%
- 검토 내역

연번	선금지급 조건	검 토 결 과
1	○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계약이 적정한가	○ 1차계약금액: 금665,228,000원 ⇒ 적정
2	○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	○ 기성금 지급 없음 ⇒ 적정
3	○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여부	○ G2B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음 ⇒ 적정
4	○ 선금요청적정요율: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하 - 공사(20억 원 미만) 선금의무지급율: 계약금액의 50%이상 - 다만,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	○ 선금지급신청율:1차계약금액의 내역서상 재료비 + 경비의 30% ⇒ 88,339,860원 적정
5	○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1일 이상인지 여부	○ 잔여 계약이행기간 선금지급 신청일: 2015.7.11. ~ 1차준공기한: 2015.12.31.(150일) ⇒ 적정

- 검 토 사 항 : 선금지급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급함이 타당함